



◆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고발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례 적발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 기간 동안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자사 의약품 라노졸정(Lanazole) 판매와 관련해 처방액의 20~30%까지 지원했는데, 이를 4단계로 나누어 거래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증가 시켰다. 부루펜(Brufen), 미클라캡셀(Miclor Capsule) 등의 판매와 관련해 처방 증량비를 지원했는데,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 했다.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을 이미 판매 중인 타사 의약품과 효능면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내부평가에 따라 초기 랜딩비(Landing) 명목으로 15% 수준을 지원했고,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했으며,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판매와 관련, 처방규모에 따라 10~30%를 지원했는데,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또한 폴리부틴(Polybutine, 소화성궤양용제) 판매와 관련해 PCP 정책을 통해 랜딩 및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액의 10~15%를 지원하고,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 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원했다.

그리고 삼일제약은 전국 302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21억 83만 9,000 원으로, 제공된 리베이트의 내역은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 식사 접대, 컴퓨터냉장고 등의 물품 지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제약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삼일제약은 2007년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유사한 행위가 다시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으로, 특히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 조치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